

강서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1월 28일
미래·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년 11월 5일

나. 제출자: 강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2019년 11월 20일

라. 상정일자: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 상정·의결(2019. 11. 28.)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어르신복지장)

가. 제안이유

중·장년층의 은퇴이후 인생이모작을 지원하는 강서50플러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명: 강서50플러스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 위탁근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

2) 추진일정

- 2020. 1~2월: 공개경쟁모집에 의한 강서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의·선정
- 2020. 3월: 위탁협약 체결 및 개관준비
- 2020. 6월: 강서50플러스센터 개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운영비 연700,000천원(시 50% : 구 50%)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정우숙)

가. 종합 의견

- 이 동의안은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강서50플러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 기관을 선정하고 사후 지도·감독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붙임 관계법령 1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8조(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에 보고받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 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 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연례 반복적 사무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